

의안번호	2212457
의 퇴 인	이철규의원
회 답 일	2025.10.23.
추계번호	25D4649

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제17조의2 (읍·면·동 설치 특례) 신설	-강원자치도의 시 중에서 국가의 산업정책과 행정효율화를 목적으로 읍·면 지역을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설치된 시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·면을 둘 수 있도록 함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제17조의2 (읍·면·동 설치 특례) 신설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읍·면·동 설치 특례(안 제17조의2)

- 개정안은 강원자치도의 시 중에서 국가의 산업정책과 행정효율화를 목적으로 읍·면 지역을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설치된 시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, 그 밖의 지역에는 읍·면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
-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읍·면 및 읍·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관련법령에 따라 지방세 감면 등 각종 세제지원과 재정지원을 받고 있음
[참고자료] 읍·면 지역 혜택 사례
- 따라서 개정안 시행에 따라 ‘동’이 ‘읍·면’으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지역이 관련법령상 읍·면 지원 대상에 편입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세제 및 재정 지원 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 현 시점에서 동에서 읍·면으로의 행정구역 개편 시기, 규모, 대상지역 수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임홍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홍연	02-6788-4673	limhy@na.go.kr

[참고자료] 읍·면 지역 혜택 사례

항목	세부사항	관계법령																		
토지 재산세	- 세율 읍·면 지역 농지 : 과세표준의 0.7/1,000 ※ 동 지역 토지: 2/1,000 동 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·녹지지역에 있는 경우에만 0.7/1,000	「지방세법」 제111조제1항제1호																		
건축물 재산세	- 세율 : 과세표준의 2.5/1,000 ※ 동지역 건축물 : 5/1,000	「지방세법」 제111조제1항제2호																		
면허세	단위: 원 <table> <tr> <th>종류</th><th>읍·면</th><th>동</th></tr> <tr> <td>1종(주류제조업 등)</td><td>27,000</td><td>45,000</td></tr> <tr> <td>2종(식품보존업 등)</td><td>18,000</td><td>34,000</td></tr> <tr> <td>3종(방문판매업 등)</td><td>12,000</td><td>22,500</td></tr> <tr> <td>4종(변호사개업 등)</td><td>27,000</td><td>15,000</td></tr> <tr> <td>5종(교습소운영 등)</td><td>4,500</td><td>7,500</td></tr> </table>	종류	읍·면	동	1종(주류제조업 등)	27,000	45,000	2종(식품보존업 등)	18,000	34,000	3종(방문판매업 등)	12,000	22,500	4종(변호사개업 등)	27,000	15,000	5종(교습소운영 등)	4,500	7,500	「지방세법」 제34조제2항
종류	읍·면	동																		
1종(주류제조업 등)	27,000	45,000																		
2종(식품보존업 등)	18,000	34,000																		
3종(방문판매업 등)	12,000	22,500																		
4종(변호사개업 등)	27,000	15,000																		
5종(교습소운영 등)	4,500	7,500																		
양도소득세	- 읍·면 지역의 농지 중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	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9조 및 시행령 제66조																		
환경개선부담금	- 지역계수 0.4 적용* * 기본부과금액×오염유발계수×차량계수×지역계수 ※ 동지역: 시(市)인구 10만 미만: 0.4 10만~50만: 0.85 50만~100만: 0.87	「환경개선비용부담법」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5조, [별표7]																		
건강보험료 감면	- 읍·면 거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22% 경감	「국민건강 보험법」 제75조, 「보험료경감고시」 제4조																		
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	- 농어촌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설치	「영유아보육법」 제12조																		
대입특별전형	- 농어촌(읍·면)자녀 특별전형(입학정원 4% 이내)	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9조,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																		
도로관리청	일반국도 관리(국토교통부장관) ※ 동지역: 해당 시장	「도로법」 제23조																		
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	농어촌(읍·면) 소재 어린이집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(월 11만원) 지급	보건복지부 보육사업																		
농어촌 차량운영비 지원	농어촌(읍·면) 소재 어린이집 대상 통학버스 운영비(연 240만원) 지원																			

자료: 행정안전부